

창원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나10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나1054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가단4513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하인호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가단4513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9. 21.

판 결 선 고 2007.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

3. 4. 접수 제21982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등기 신청시 제출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을 제2호증)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2006. 7. 7.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3068호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6노1154호로 항소하였다.

다. 한편 망 E는 2001. 12.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지분씩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원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제15호증의 6 내지 8(을 제7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16 내지 19, 22,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G 외에 망 E의 상속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었고, 원고 C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자신의 자녀들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든 처지였던 사실, 피고는 2001. 12.경 원고 A, B에게는 '망 E가 운영하던 G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자 위 G의 사업자등록이전을 한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을2호증)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고, 원고들의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이 없는 부적법한 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4분의 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87. 태풍으로 인하여 구건물이 파손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아버지인 E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어서 E로부터 자신 명의로 한 이 사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

나. 살핀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은 갑 제11호증, 제15호증의 6 내지 8(을 제7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이영선 판사 이규호

별지